

“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”

|      |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|
| 등록번호 | 환경과-38983   |
| 등록일자 | 2015.10.13. |
| 결재일자 | 2015.10.13. |
| 공개구분 | 부분공개(6)     |

|     |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|  |  |
|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|--|--|
| 주무관 | 기후변화대응팀장 | 환경과장 | 도시환경국장          |  |  |
| 이경미 | 김갑용      | 이춘수  | 전결 10/13<br>배경섭 |  |  |
| 협조자 |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|  |  |

-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-

## 환경개선부담금 결손처리 계획



### ■ 체납 및 결손대상 현황(2001.1기~2010년2기)

- 체납액 : 58,387건 5,272,612,700원
- 결손대상 : 2,393건 229,032,740원

### ■ 결손처리 기간 : 2015. 10.13 ~ 10.14.

- 관련법률 :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업무처리규정 제29조제2호 (소멸시효완성),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1항3호(결손처분)

### ■ 체납정리

- 일제정리기간 운영 : 년2회(상반기 5,6월, 하반기 11,12월)
- 체납대상 자료 일제정비(송달주소), 체납고지서발송,체납처분
- 체납전담팀 운영
- 재산조회 및 체납처분(압류)
  - 시설물 : 체납자 부동산 소유 현황조회 후 압류
  - 자동차 : 자동차등록전산망 이용 체납자 자동차 소유내역 수시 조회 후 압류

2015 . 10. 13.

강 남 구  
( 환 경 과 )

## 【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】

| 검토분야  | 확인 및 적시사항  |
|---|--|
| <b>관련 규정<br/>및 근거</b>                       | 현행 관련 법, 시행령, 조례, 규칙,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<br><br>• 환경개선부담금 부과·징수업무처리규정 제29조제2호<br>•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1항3호(결손처분)  |
| <b>추진 경위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?<br><br>• 추진경위 : 환경과-16865(2015.4.28)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대한 징수정리 계획  |
| <b>예산 사항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<br><br>• 비예산  |
| <b>수혜자<br/>및 범위</b>                         | 이 업무(사업)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?<br><br>• 대상 : 공무원 ----, 일반주민 : ○----, 특정인 : ----, 기타 : ----  |
| <b>분야 별<br/>검토사항</b><br>[계속 : ○]<br>[신규 : ] | 이 업무(사업)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?<br>① 관련부서 협조 ----- ( )<br>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----- ( )<br>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----- ( )<br>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----- ( )<br>⑤ 시장조사 ----- ( )<br>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----- ( )<br>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----- ( ○ )<br>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----- ( )<br>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----- ( )<br>•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,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|
| <b>타 기관<br/>사 례</b>                         | 타 구 사례를 파악, 비교해 보았습니까?<br><br>• 타 구 실태파악 결과<br>- 24개구청 연2회 시효결손처리 함  |
| <b>전문가<br/>자 문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?<br><br>• 전문가 자문 불필요   |

-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-

## 환경개선부담금 결손처리 계획

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지속적인 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누적증가하고 있으므로 체납정리 및 결손처리를 통해 세입증대 및 징수율을 향상시키고자 함

### I 현 황

□ 체납 및 결손대상 현황(2001.1기~2010.2기)

- 체납액 : 58,387건 5,272,612,700원
- 결손대상 : 2,393건 229,032,740원

(단위 : 건 / 원)

| 구분   | 시 설 물 |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자 동 차  |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
|      | 체납    |             | 결손처분 |            | 체납     |               | 결손처분  |             |
|      | 건수    | 금액          | 건수   | 금액         | 건수     | 금액            | 건수    | 금액          |
| 2001 | 89    | 123,459,300 | 14   | 20,354,130 | 1,342  | 192,696,400   | 76    | 16,771,580  |
| 2002 | 44    | 27,301,700  | 3    | 2,165,380  | 1,950  | 145,490,400   | 48    | 3,309,230   |
| 2003 | 57    | 15,822,340  | 3    | 2,313,160  | 4,874  | 375,033,810   | 98    | 7,175,190   |
| 2004 | 63    | 28,441,100  | 3    | 2,049,250  | 5,262  | 420,722,100   | 120   | 9,155,150   |
| 2005 | 82    | 24,785,790  | 3    | 2,043,600  | 5,983  | 496,176,630   | 136   | 11,243,300  |
| 2006 | 89    | 24,956,110  | 4    | 2,095,680  | 7,017  | 603,234,080   | 157   | 13,642,440  |
| 2007 | 96    | 25,314,070  | 8    | 2,552,150  | 7,134  | 621,668,140   | 169   | 14,946,720  |
| 2008 | 102   | 23,367,720  | 9    | 4,110,270  | 7,539  | 631,224,460   | 162   | 13,672,800  |
| 2009 | 143   | 47,041,150  | 35   | 15,187,280 | 7,930  | 664,675,810   | 464   | 29,722,960  |
| 2010 | 166   | 35,449,020  | 55   | 8,515,100  | 8,425  | 745,752,570   | 826   | 48,007,370  |
| 총계   | 931   | 375,938,300 | 137  | 61,386,000 | 57,456 | 4,896,674,400 | 2,256 | 167,646,740 |

※ 기준일 : 2015. 10.20. 현재( ~10.8일까지 수납자료)

### II 결 손 처 분

□ 기 간 : 2015. 10. 13 ~10. 14

- 관련법률 : 환경개선부담금 부과·징수업무처리규정 제29조제2호 (소멸시효완성),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1항3호(결손처분)
- 결손대상 : 2001년 1기 ~ 2010년 2기(시효완성)
  - 시설물 : 137건 61,386,000원 자동차 : 2,256건 167,646,740원

- 압류 등 시효중단사유가 없으면서 세외수입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

### Ⅲ 체납원인 및 체납정리 방법

#### □ 체납원인

- 경기침체에 따른 납부능력 저하 및 납부의식 저조
  - 납부자의 사업부진, 무재산, 폐업·부도, 행방불명 등 납부능력 저하
  - 조세채권에 비해 체납처분이 약하므로 자진 납부의식 부족
- 다양한 징수체계 및 체납징수 수단 미약
  - 세외수입 관련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징수절차 규정이 없고, 세법 준용범위가 불명확하여 법적용에 혼란
  - 지방세에 준하는 다양한 유인 조치와 강력한 행정제재 수단 부재

\*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수단 비교

| 구 분         | 지방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외수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금융재산 조회     |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조세채납자로 한정 | 금융재산 조회 대상에서 세외수입 체납자 제외(개선)         |
| 압류처분 효력의 범위 | 국세징수법 제47조, 압류 이후 발생하는 체납까지 유효       | 압류당시 체납만 유효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경·공매 배분순위   | 후순위 압류를 하여도 법정기일에 따라 교부청구 시 선순위 인정   | 선순위 압류 불인정, 조세채권 우선 배당 후 일반채권과 안분 배당 |

- 특히, 자동차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하였어도, 경락경매,차령초과, 멸실말소 등으로 인한 체납자가 많음

#### □ 체납정리

- 일제정리기간 운영 : 년2회(상반기 5,6월, 하반기 11,12월)
  - 독촉고지서발부, 고액체납자 징수독려, 체납처분, 결손처분
- 체납전담팀 운영
  - 총괄반장 : 기후변화대응팀장(2개반 6명)
    - 1 반 : 이경미, 신수경 , 이민진  
(신사동, 압구정동, 대치동, 도곡동, 청담동, 개포동, 세곡동)
    - 2 반 : 윤혜선, 정명훈, 정상원  
(역삼동, 논현동, 삼성동, 일원동, 수서동)

- 체납대상 자료 일체정비(송달주소)
  - 개인 : 자치행정과 주민등록 전산망 이용하여 주소 up-date
  - 법인 : 행정정보공동이용통신망 이용 법인주소정비
-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발송
- 재산조회 및 압류(체납처분)
  - 자동차 : 자동차등록전산망 이용 자동차 소유내역 조회 후 체납처분
    - 수시로 소유내역 조회 : 차령초과, 멸실말소 차량 대체압류확보
    - 압류예고 통지 후 체납처분으로 결손 최소화 노력
  - 시설물(10만원이하) : 자동차 소유시 자동차에 체납처분
  - 시설물,자동차(1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) : 부동산정보과에 부동산소유내역 조회 의뢰 후 체납처분
  - 압류예고통지 : 1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

붙임 : 시효결손자료(2001.1기~2010.2기)